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9. 4.24.(수) 14: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제1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

- 제18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
- 제18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7] 의결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 (2019-19-091)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에 대해 객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2건이 개정('19.6.12, '19.6.25 각각 시행)됨에 따라,
- 세부 시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현행 시행령 상 규정(비필수앱 삭제 관련 금지행위)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기존 시행령 상 규정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별정통신사업 폐지)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명령의 기준(별표 5의2)”상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

2) 고시(2건) 개정안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재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시 문구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삭제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시행령 법률상향)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신설된 조항 추가

※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6월에 시행될 예정

8]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 상향 조정 (▶이후 개정과정은 법제처에서 진행 예정)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액 : 만원)

과태료 상한액	1,000				1,500				5,000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3회	4회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3회	4회
현행	100	300	600	1,000	150	450	900	1,500	500	1,500	3,000	5,000
개정안	300	600	1,000		450	900	1,500		1,500	3,000	5,000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송신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 방송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한국방송공사(KBS)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제54조제4항으로 신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IPTV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 IPTV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①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 관계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신설, ② 관련 자료제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 신설 등

9.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회의는 5월 1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4:57)